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4,451,523	9,733,546
일반회계	288,076,642	8,642,299
특별회계	36,374,881	1,091,246
공기업특별회계	16,165,582	484,9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65,582	484,967
기타특별회계	20,209,299	606,2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1,048	33,931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733,800	52,01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043,597	91,308
기반시설특별회계	459,900	13,79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47,000	10,41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67,215	23,016
수질개선특별회계	12,726,739	381,802

제 2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계속비사업) :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467,26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예산의 이용) :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